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증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32-511-247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11.(금)	2025.04.21.(월)	2025.04.22.(화)	2025.04.23.(수)	2025.04.29.(화)	2025.05.01.(목)~ 2025.05.06.(화)	2025.05.12.(월)~ 2025.05.16.(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면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면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하였으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해링턴스퀘어산곡역.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21.(월)	2025.04.22.(화)	2025.04.23.(수)	2025.04.29.(화)	2025.05.01.(목)~ 2025.05.06.(화)	2025.05.12.(월)~ 2025.05.16.(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88-28) 		

있습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합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를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인지세 납부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정수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해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 6933호(2025.04.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대 45층 14개동 총 2,475세대[조합 1,177세대(보류지 37세대 포함), 임대50세대] 중 일반분양 1,248세대 [특별공급 687세대(기관추천 125세대, 다자녀가구 125세대, 신혼부부 287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생애최초 11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098	01	039.6187A	39A	39.6187	16.6484	56.2671	30.3918	86.6589	14.9800	17	1	0	4	1	1	7	10	-
	02	039.9294B	39B	39.9294	16.7453	56.6747	30.6301	87.3048	15.0900	35	3	0	8	1	1	13	22	-
	03	059.8642A	59A	59.8642	24.0721	83.9363	45.9222	129.8585	22.3500	318	32	32	73	9	28	174	144	12
	04	059.7645B	59B	59.7645	25.4522	85.2167	45.8457	131.0624	22.6900	387	38	39	89	9	36	211	176	12
	05	074.7060A	74A	74.7060	29.2857	103.9917	57.3075	161.2992	27.6900	86	9	10	20	2	8	49	37	5
	06	074.7067B	74B	74.7067	30.6340	105.3407	57.3080	162.6487	28.0400	119	13	12	27	4	11	67	52	5
	07	084.8470A	84A	84.8470	32.8555	117.7025	65.0867	182.7892	31.3300	84	9	10	20	4	9	52	32	13
	08	084.8996B	84B	84.8996	33.7012	118.6008	65.1271	183.7279	31.5700	68	7	8	16	3	6	40	28	9
	09	084.6552C	84C	84.6552	33.6698	118.3250	64.9396	183.2646	31.5000	88	9	9	20	3	8	49	39	6
	10	084.9099D	84D	84.9099	33.5137	118.4236	65.1350	183.5586	31.5300	41	4	5	10	2	4	25	16	5
					96.6672	37.0124	133.6796	74.1540	207.8336	35.5900	5	-	-	-	-	-	-	5
합계										1,248	125	125	287	38	112	687	561	70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 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해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배정 세대 중 청약 미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39A	39B	59A	59B	74A	74B	84A	84B	84C	84D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6	7	1	2	2	1	1	-	22
	장기복무제대군인	-	1	6	7	1	2	2	1	1	1	2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6	7	2	2	1	1	2	1	23
	중소기업 근로자		-	-	6	7	2	3	1	1	2	1	23
	장애인	인천	-	-	3	4	1	2	1	1	1	1	14
		서울	-	-	3	3	1	1	1	1	1	-	11
경기		-	-	2	3	1	1	1	1	1	-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	16	20	5	6	5	4	5	3	64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	16	19	5	6	5	4	4	2	61
신혼부부 특별공급			4	8	73	89	20	27	20	16	20	10	28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9	9	2	4	4	3	3	2	38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	28	36	8	11	9	6	8	4	112
합계			7	13	174	211	49	67	52	40	49	25	687

※ 주택형별 특별 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39.6187A	039.9294B	059.8642A	059.7645B	074.7060A	074.7067B	084.8470A	084.8996B	084.6552C	084.9099D	096.6672
약식표기	39A	39B	59A	59B	74A	74B	84A	84B	84C	84D	96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2025-08-20	2025-12-22	2026-06-22	2026-12-21	2027-06-21	2027-12-20	
39A	10~19층	2	99,953,600	258,046,400	-	358,000,000	17,9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25,300,000
	20~29층	8	101,070,400	260,929,600	-	362,000,000	18,1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26,700,000
	30층이상	7	102,745,600	265,254,400	-	368,000,000	18,4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28,800,000
39B	10~19층	3	103,024,800	265,975,200	-	369,000,000	18,45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29,150,000
	20~29층	18	104,141,600	268,858,400	-	373,000,000	18,65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30,550,000
	30층이상	14	105,816,800	273,183,200	-	379,000,000	18,95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32,650,000
59A	1층	5	159,144,000	410,856,000	-	570,000,000	28,5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99,500,000
	2층	11	160,260,800	413,739,200	-	574,000,000	28,7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200,900,000
	3층	10	161,936,000	418,064,000	-	580,000,000	29,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203,000,000
	4층	11	163,611,200	422,388,800	-	586,000,000	29,3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205,100,000
	5~9층	53	165,286,400	426,713,600	-	592,000,000	29,6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207,200,000
	10~19층	97	166,124,000	428,876,000	-	595,000,000	29,75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208,250,000
	20~29층	79	167,520,000	432,480,000	-	600,000,000	3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210,000,000
30층이상	52	170,591,200	440,408,800	-	611,000,000	30,55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213,850,000	
59B	1층	1	158,306,400	408,693,600	-	567,000,000	28,35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98,450,000
	2층	6	159,423,200	411,576,800	-	571,000,000	28,55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199,850,000
	3층	12	161,098,400	415,901,600	-	577,000,000	28,85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201,950,000
	4층	12	162,773,600	420,226,400	-	583,000,000	29,15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204,050,000
	5~9층	60	164,169,600	423,830,400	-	588,000,000	29,4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205,800,000
	10~19층	118	165,007,200	425,992,800	-	591,000,000	29,55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206,850,000
	20~29층	105	166,682,400	430,317,600	-	597,000,000	29,85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208,950,000
30층이상	73	169,753,600	438,246,400	-	608,000,000	3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74A	1층	1	201,303,200	519,696,800	-	721,000,000	36,05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52,350,000
	2층	5	202,420,000	522,580,000	-	725,000,000	36,25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253,750,000
	3층	4	204,653,600	528,346,400	-	733,000,000	36,65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256,550,000
	4층	5	206,887,200	534,112,800	-	741,000,000	37,05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59,350,000
	5~9층	25	209,120,800	539,879,200	-	749,000,000	37,45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62,150,000
	10~19층	27	209,958,400	542,041,600	-	752,000,000	37,6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63,200,000
	20~29층	10	211,912,800	547,087,200	-	759,000,000	37,95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65,650,000
30층이상	9	215,542,400	556,457,600	-	772,000,000	38,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74B	2층	4	201,303,200	519,696,800	-	721,000,000	36,05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52,350,000
	3층	5	203,257,600	524,742,400	-	728,000,000	36,4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254,800,000
	4층	5	205,491,200	530,508,800	-	736,000,000	36,8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257,600,000
	5~9층	25	207,445,600	535,554,400	-	743,000,000	37,15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260,050,000
	10~19층	46	208,562,400	538,437,600	-	747,000,000	37,35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261,450,000
	20~29층	23	210,516,800	543,483,200	-	754,000,000	37,7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63,900,000
30층이상	11	214,146,400	552,853,600	-	767,000,000	38,35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68,450,000	
84A	1층	8	227,548,000	587,452,000	-	815,000,000	40,75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285,250,000
	2층	13	228,944,000	591,056,000	-	820,000,000	41,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287,000,000
	3층	14	231,456,800	597,543,200	-	829,000,000	41,45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290,150,000
	4층	14	233,969,600	604,030,400	-	838,000,000	41,9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293,300,000
	5~9층	35	236,203,200	609,796,800	-	846,000,000	42,3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96,100,000
84B	2층	4	226,431,200	584,568,800	-	811,000,000	40,55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283,850,000
	3층	9	228,664,800	590,335,200	-	819,000,000	40,95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286,650,000
	4층	9	231,177,600	596,822,400	-	828,000,000	41,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89,800,000
	5~9층	42	233,411,200	602,588,800	-	836,000,000	41,8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92,600,000
	10~19층	4	234,528,000	605,472,000	-	840,000,000	42,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94,000,000
84C	2층	1	225,872,800	583,127,200	-	809,000,000	40,45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83,150,000
	3층	6	228,106,400	588,893,600	-	817,000,000	40,85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285,950,000
	4층	6	230,619,200	595,380,800	-	826,000,000	41,3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289,100,000
	5~9층	29	232,852,800	601,147,200	-	834,000,000	41,7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291,900,000
	10~19층	46	233,969,600	604,030,400	-	838,000,000	41,9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293,300,000
84D	1층	3	229,223,200	591,776,800	-	821,000,000	41,05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287,350,000
	2층	5	230,619,200	595,380,800	-	826,000,000	41,3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289,100,000
	3층	4	233,132,000	601,868,000	-	835,000,000	41,75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292,250,000
	4층	5	235,365,600	607,634,400	-	843,000,000	42,15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295,050,000
	5~9층	24	237,878,400	614,121,600	-	852,000,000	4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96	1층	1	256,026,400	600,885,091	60,088,509	917,000,000	45,85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320,950,000
	2층	3	257,701,600	604,816,727	60,481,673	923,000,000	46,15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323,050,000
	3층	1	260,493,600	611,369,455	61,136,945	933,000,000	46,65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326,55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나이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 공간 등은 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주거 전용+주거 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 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 정리, 진입로(가감속 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 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이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열쇠인수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누어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 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 점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 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 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 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나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 특례)	신혼부부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 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 혼인 특례 또는 출산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나이(연월일 계산)가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음</p>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2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용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음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 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자녀 수 → ④청약 신청자의 나이(연월일 계산)가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배점 항목</th> <th style="width: 10%;">총 배점</th> <th colspan="2" style="width: 40%;">배점 기준</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r> <td></td> <td></td> <th style="width: 20%;">기준</th> <th style="width: 20%;">점수</th> <td></td>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자녀 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 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지난 분</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 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 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간주함</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 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r> <td colspan="5" data-bbox="320 1340 2157 1434">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td> </tr> </tbody> </table>	배점 항목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 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 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지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 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 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간주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배점 항목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 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 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지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 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 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간주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 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 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자녀 수 → ⑤추첨 ■ ①소득 구분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 공급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자녀 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 자녀 포함) 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 자녀 포함) 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을 포함 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4.1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수령한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 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 기간(사업자등록 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를 바람
-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 산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 평균한 금액

- 자산 보유 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p>-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 기준)에 따른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24 529 2107 1204"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0%;">가점 상한</th> <th style="width: 20%;">가점 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20%;">가점 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 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 colspan="6" data-bbox="324 1204 2107 1235">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td> </tr> <tr> <td colspan="6" data-bbox="324 1235 2107 1266">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td> </tr> <tr> <td colspan="6" data-bbox="324 1266 2107 13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td> </tr> <tr> <td data-bbox="123 1356 318 1466">비고</td> <td colspan="6" data-bbox="318 1356 2157 14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나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나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나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청약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 세대'란, 단독가구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 원에 해당하는 분과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 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 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 의무자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 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 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31 777 2157 116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30%;">소득 구분</th> <th style="width: 6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 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4.1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 신청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수령한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25%;">가점제</th> <th style="width: 25%;">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p>- 가점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5%;">가점 상한</th> <th style="width: 20%;">가점 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20%;">가점 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7">32</td> <td>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②부양가족수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35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 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 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 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 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 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시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35%;">비율</th> <th style="width: 5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이나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지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 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용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 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보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 서류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등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 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나

청약연습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 방법 : 청약자격 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 구성원 동의 - 이용 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 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당첨조회 - 조회 기간 : 2025.04.29.(화)~2025.05.08.(목) (10일간) - 조회 기간(10일)이 지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 내용 확인 가능 - 현장 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 내용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용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용 조회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내용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4.29.(화)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5.05.01.(목)~05.06.(화) 10:00 ~ 16:00	·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8-28번지)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당사 홈페이지 : https://해링턴스퀘어산곡역.com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추후 일정 공지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용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정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 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해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검정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만 가능)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으로 당첨된 자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산정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대리인 구비 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가능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결정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전세 피해자 제출 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 필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㉞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㉞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 전전년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서류	㉠ 접수장소 ㉡ 세무서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

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 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 필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입증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해당년도 포함)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이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세대원별 각각 발급)를 인쇄하여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문의전화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5.12.(월) ~ 05.16.(금) 5일간, (10:00~16:00)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8-28번지)	032-511-2475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검수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검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해당 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아파트 공급대금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금액	농협은행	301-0365-2926-61	산곡재개발정비사업조합,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의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수,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자 명단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변경,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한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용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data-bbox="353 1219 2101 1329">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td> <td>85㎡ 이하</td> <td>5억원</td> <td>3억원</td> </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0% (2025-08-20)	잔금 80% (입주지정일)
39A	-	-	-	-
39B	-	-	-	-
59A	17,710,000	1,771,000	1,771,000	14,168,000
59B	18,810,000	1,881,000	1,881,000	15,048,000
74A	15,950,000	1,595,000	1,595,000	12,760,000
74B	16,060,000	1,606,000	1,606,000	12,848,000
84A	16,940,000	1,694,000	1,694,000	13,552,000
84B	16,720,000	1,672,000	1,672,000	13,376,000
84C	16,390,000	1,639,000	1,639,000	13,112,000
84D	18,810,000	1,881,000	1,881,000	15,048,000
96	18,590,000	1,859,000	1,859,000	14,872,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6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6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6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6010203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국민은행	670101-01-349746	효성중공업(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가타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의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세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위치, 시스템에어컨 위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등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행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타입)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제조사명)
39A, 39B	2개소	거실+주방	3,190,000	삼성
59A, 59B	2개소	거실+안방	3,410,000	
	4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5,830,000	
74A, 74B	2개소	거실+안방	3,520,000	
	4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6,160,000	
84A, 84B, 84C, 84D	3개소	거실+주방+안방	4,840,000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590,000	
96	3개소	거실+주방+안방	5,390,000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36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으로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비용은 에어컨 설치금액에서 미흡선시 적용되는 매립배관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 가전제품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제조사명	모델번호	공급금액	비고			
주방	59A, 59B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냉장고장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RR40C78(9)95AP RZ34C78(9)65AP RQ34C78(9)45AP	5,610,000	-			
	74A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냉장고장 + 키큰수납장			6,490,000	-			
	74B				6,380,000	-			
	84A				6,600,000	-			
	84B				6,380,000	-			
	84C				6,380,000	-			
	84D				6,600,000	-			
	96				6,490,000	-			
	전타입(39A, 39B 제외)				식기세척기	삼성	DW60T7065SS	880,000	-
	전타입(39A, 39B제외)				인덕션(3구)	쿠쿠	CIR-G301FAW	660,000	-
부부욕실	84A,84D,96		렌지후드(독립형)	하츠	PSC-90S	880,000	-		
	84B,84C	990,000				-			
부부욕실	전타입(39A, 39B제외)	다기능 복합건조기	그렉스	BD_150A+	770,000	-			
드레스룸	전타입(39A, 39B, 59A, 59B제외)	천장형 제습기	코스텔	CDD-600B	880,000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 선반)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기본 냉장고장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건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상부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용량에 따라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코스텔 (CDD-600B)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 선반) ' 미 선택 시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안방 드레스룸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지정된 위치 외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3)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공급금액	비고
현관중문	전타입(39A, 39B제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320,000	-
		3연동 슬라이딩 자동 도어	2,420,000	-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중문과 가구 및 벽채, 문짝과 문짝 사이에 이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 형태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하며 본공사시 프레임 및 창호 부속물 등의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비고
천정	감성조명 + 디자인 특화등 - 감성조명(거실등+거실간접등+안방등+감성조명스위치), - 디자인 특화등(복도픽처레일 일체형 간접등+현관신발장 하부조명)	59A	5,610,000	-
		59B	6,160,000	
		74A	6,160,000	
		74B	6,490,000	
		84A	6,820,000	
		84B	6,930,000	
		84C	7,040,000	
		84D	7,150,000	
바닥	복도 / 거실 / 주방 / 침실 / 프리미엄 광폭강마루	96	7,480,000	-
		59A	330,000	
		59B	440,000	
		74A	550,000	
		74B	550,000	
		84A	550,000	
		84B	550,000	
		84C	550,000	
벽	거실 아트월 : 세라믹타일(1200X2300)	84D	550,000	미선택시 지정 포셀린타일(600X1200)
		96	660,000	
		59A	2,640,000	
		59B	3,410,000	
		74A	2,970,000	
		74B	3,850,000	
		84A	2,970,000	
		84B	3,740,000	
84C	4,070,000			
		84D	2,640,000	
		96	3,190,000	

욕실 벽	욕실 벽 타일(600x600)	59A	660,000	미선택시 지정 도기질타일(300x600)	
		59B	660,000		
		74A	660,000		
		74B	660,000		
		84A	660,000		
		84B	660,000		
		84C	550,000		
		84D	660,000		
		96	550,000		
히든도어 패키지	히든도어 + 복도 디자인판넬 + 고급손잡이 (안방 / 침실1 / 침실2 / 공용욕실)	59A	6,270,000	히든도어+벽면 시트판넬+고급손잡이+조명형 선반	
		59B	6,600,000	히든도어+벽면 시트판넬+세라믹타일+고급손잡이	
		74A	6,930,000	히든도어+벽면 시트판넬/가구판넬+고급손잡이+폴딩도어	
		74B	9,460,000	히든도어+벽면 시트판넬/가구판넬+세라믹타일+고급손잡이+폴딩도어	
		84A	6,380,000	히든도어+벽면 가구판넬+디자인월 판넬+고급손잡이(와이드다이닝 선택시)	
			7,590,000	히든도어+벽면 가구판넬+디자인월 판넬+고급손잡이(와이드다이닝 미선택시)	
		84B	10,450,000	히든도어+벽면 시트판넬+디자인월 판넬+세라믹타일+고급손잡이+폴딩도어	
		84C	10,450,000		
		84D	6,380,000	히든도어+벽면 가구판넬+디자인월 판넬+고급손잡이(와이드다이닝 선택시)	
7,590,000	히든도어+벽면 가구판넬+디자인월 판넬+고급손잡이(와이드다이닝 미선택시)				
96	6,380,000	히든도어+벽면 가구판넬+디자인월 판넬+고급손잡이(수납강화 선택시)			
96	7,590,000	히든도어+벽면 가구판넬+디자인월 판넬+고급손잡이(수납강화 미선택시)			
현관창고	현관창고(폴딩도어 적용)+시스템가구	59A, 59B	660,000	미선택시 신발장으로 설치	
불박이장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1개소)	59A, 59B	660,000	침실1 or 침실2 (미선택시 여닫이 불박이장 1개소 제공(확장시))
		교차형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74A, 74B	2,420,000	침실1, 침실2 (미선택시 여닫이 불박이장 1개소 제공(확장시))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2개소)	84A, 84B, 84C, 84D, 96	2,420,000	침실1, 침실2 (미선택시 여닫이 불박이장 1개소 제공(확장시))
		통합형 불박이장	59B	5,170,000	무상옵션(침실1, 침실2 통합) 선택 시
		74A	5,500,000	84D는 창호간섭으로 해당없음	
		74B	5,280,000		
84A, 84B, 84C, 96	5,500,000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 선반)	74A	3,850,000	-	
		74B	3,300,000		
		84A	5,170,000		
		84B	3,410,000		
		84C	3,410,000		
		84D	4,620,000		
		96	5,280,000		
일반가구 업그레이드	현관W.I.C 여닫이타입 1개소 → 현관W.I.C+폴딩도어 1개소	84A, 84B, 84C, 84D, 96	880,000	-	
DP 가구	식탁 + 의자	59A	4,840,000	-	
		59B	4,180,000	-	
		74B	2,640,000	주방 상판/벽체+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84A	3,520,000	-	
		거실장	59A, 59B	3,520,000	-
			74A, 74B	4,180,000	
84A, 84B, 84C, 84D, 96	5,060,000	-			

• 디자인 특화등 미선택시 주방우물천정 루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방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비고	
주방 천정	주방조명(식탁등+주방등) + 주방우물천정	우물천정+루버 적용	59A	1,210,000	84A, 84D 타입은 와이드 다이닝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루버 적용	59B	1,100,000	
		우물천정+루버 적용	74A	1,320,000	
		루버 적용	74B	990,000	
		우물천정+루버 적용	84A	2,090,000	
		루버 적용	84B	1,320,000	
		루버 적용	84C	1,320,000	
		우물천정+루버 적용	84D	1,870,000	
		우물천정+루버 적용	96	1,320,000	
주방가구	주방 조명매입형 유리 상부장 + 미드웨이장 + 외산 싱크볼	59A	2,200,000	59A는 매입형콘센트 제외	
		59B	2,640,000	-	
		74A	3,960,000	-	
		74B	2,530,000		
		84A	3,300,000	-	
		84B, 84C	2,970,000		
		84D	3,300,000		
			96	2,420,000	
	아일랜드 연장 + 주방장식장(상부장)	74A	3,630,000	주방상판/벽체 옵션 선택시	
			2,420,000	주방상판/벽체 옵션 미선택시	
74B		4,290,000	주방상판/벽체 옵션 선택시		
			2,750,000	주방상판/벽체 옵션 미선택시	
주방상판/벽체	주방상판/벽체 세라믹타일 + 매입형콘센트	59A	4,290,000	-	
		59B	4,730,000		
		74A	4,840,000		
		74B	4,620,000		
		84A	8,250,000		
		84B	6,930,000		
		84C	6,930,000		
		84D	8,140,000		
		96	8,030,000		
와이드 다이닝	주방 장식장+주방 팬트리(미선택시 알파룸)	84A	3,850,000	히든도어 패키지 선택 시 선택 가능	
		84D	3,850,000		
수납 강화	장식장+팬트리(미선택시 알파룸)	96	4,400,000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불박이장,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조명형시스템 선택), 시스템선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관련 유의사항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시, 기본 거실 아트월 마감은 400*800각 타일, 복도벽체는 벽지마감으로 설치됩니다.
- 안방 드레스룸 특화형 미선택시, 기본구성은 파우더+일반 드레스룸으로 설치되며, 드레스룸 내에는 일반 시스템선반으로 가구 구성 및 디자인이 변경 설치됩니다. (조명 및 벽체 판넬마감, 슬라이딩도어 미설치)
- 주방 특화형 옵션(아일랜드 / 더블팬트리 / 와이드키친)에 따라 주방가구의 수납 구성, 수납장의 크기, 가구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체 기본마감은 타일(300*600각), 주방상판 기본마감은 엔지니어드스톤이며, 주방 마감재 옵션에 따라 상판의 두께 및 가구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10%	잔금(80%)
납부시기	계약 시	2025-08-20	입주 시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국민은행	955501-00-000448	효성중공업(주)건설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6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6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공사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공사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 입주 예정일 : 2028년 06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인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시공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내진 설계

구분	내진능력
메르칼리 등급	VII 0.197g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미적용	-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부평 신곡 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4-0098-9
건축주 : 산곡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4년 7월 1일	유효기간 : 2024. 01. 29.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1동 87-903번지 일대	사용승인일(사용경사지)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45층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연면적 : 460,515.9526㎡(영가면적: 397,976.3077㎡)	발생 날까지
건축물의 주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발생 날까지
설계자 : ㈜도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발생 날까지
비단애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발생 날까지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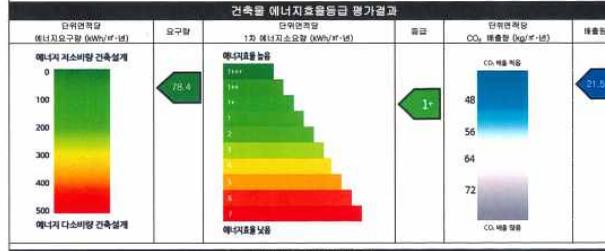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부평 신곡 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인증번호 : 24-주-에-1-1-0002
준공연월 : 20240731	평가자 : 한지서
주소 : 인천 부평구 미합로3가3번지 18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 지하 3층 / 지상 45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460,515.9526㎡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권사 종료일
건축물의 주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도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내방	0.0	0.0	0.0	0.0
난방	36.6	48.7	37.1	8.2
급탕	30.7	40.3	29.8	6.7
조명	9.1	8.5	28.5	4.0
환기		5.5	15.1	2.8
합계	78.4	103.0	105.5	21.5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난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열효율, 개관,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상황량 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와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부평 신곡 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 신 청 자 : 산곡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1동 87-903번지 일대
-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벽 차단성능	★★★★	20. 열제거 능력	-	
2. 중량층벽 차단성능	★★★★	21. 차음차단 능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친화적	★	
4. 고품수압도로, 물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생물식물친화(비오름) 조성	★★★★	
5. 차음실 급배수 소용	★	24.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감용 재료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용면도 오염방지 실시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가벽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3. 자전거주차량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4.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5. 건물용량의 환경영향 계획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6. 운송·주차관련 운송 및 매뉴얼 제공	★★★★	
3. 공공사 절토·성토량(양육기·육생기를 한 양) 최소화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4. 밀접한 건설방지 대책의 타당성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5. 에너지 성능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10. 공동주택의 사회적 약자배려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8. 지반소요면적의 적용	★★★	12. 세대 내 알츠하이머 예방	★	
9. 요양층 보호를 위한 특성용량률 사용 금지	★★★	13. 혼다트릭키 종합시스템	★	
10. 환경성상인 제로(EPO)의 사용	★★★★	14. 방범안전 콘택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에이엔에스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력기기술단	주식회사 유진씨엔이
감리금액	9,061,055,300	1,896,178,396	2,315,5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산곡재개발정비사업조합	효성중공업(주)	진흥기업(주)
법인등록번호	124271-0005016	110111-6770154	110111-0006349
주소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324번길 8-5, 5층(산곡동)	서울시 중구 퇴계로 67, 27층 외(회현동1가, AK타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69(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 보증관련 유의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원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1400 호	₩ 540,631,65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 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동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각종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도서 상의 숫자 표기가 끝자리 반올림 등의 이유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계약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는 59A타입, 59B타입, 74B타입, 84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일정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건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은 2013년 4월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경과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 각종 심의(신고 포함),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세대 전용부를 포함한 각종 공용부 및 커뮤니티 계획이 사용성, 상품성 개선 등의 이유로 현재 인허가 변경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홍보물 및 건본주택내 모형 등은 분양 시점의 인허가도서(착공도서)와 일부 상이한 사항이 있으며, 향후 조합 총회 및 인허가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변경 진행중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변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층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 계획이 현재 변경 예정중에 있어 일부 시설이 추가되거나 레이아웃 조정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공사 진행중에 커뮤니티 및 각종 공용부위 계획이 구조, 성능, 사용성 개선, 현장여건 등의 이유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은 관련 인허가(심의 포함)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CG(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p>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매연,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평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0.197g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어린이집/경로당,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키즈카페,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및 외부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해링턴가든 등),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 이행하여야 함) • 아파트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분양가에 변동은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나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침실 도어를 포함한 창호 및 비내력벽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대피공간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도기, 수전류(발코니수전 포함), 액세서리, 욕실헨, 환기디퓨저, 시스템에어컨(유상옵선),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선풍통, 온도조절기의 제품사양 수량/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아파트 내 · 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됩니다.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M/H 미 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M/H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어진 창호 형태, 위치, 사양 및 하드웨어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대 안전성 검토에 따라 높이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우물천장, 조명기기, 도어키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저 및 세대내 스피커는 본 공사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 기준으로 설치되오니 별도 확인바랍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39A, 39B, 74A, 84B, 84C, 84D, 96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59A, 59B, 74B, 84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각각 시공되나, 타입별 마감자재 정보는 별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사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됩니다. 또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홍보물(단지, 커뮤니티 등의 CG, 모형 등)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합 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포함(외관 디자인/색상 등)되어 있으며 총회 과정,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중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시공 시 해당 홍보물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의 세부 내용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스위치, 일괄소동스위치, 주방TV 등의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다용도실(세탁실)은 견본주택 배치는 참고용이며 동에서 및 관련 POP가 우선이며 기 허가도서와 상이할 경우 동에서 및 관련 POP가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상이시 설계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 홍보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CG(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인천산곡초등학교이나, 인근 개발지구 사업 여부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학생 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산곡중, 산곡남중, 부평서여중, 산곡여중, 청천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후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학교군(부평구, 계양구)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급당인원 변경,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 향후 여건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사이의 통학로 정보(거리, 시간, 지도 등)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

		<p>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단지를 가로지르는 통학로(학교가는 길)가 조성[104동과 105동 사이 1개소, 108동~110동과 112동~114동 사이 1개소]되며, 통학로(학교가는 길)는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 및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동선의 유지관리 주체는 해당 단지 입주자 대표입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 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동, 114동과 산곡초등학교 사이 어린이공원 및 산곡초등학교 동측 소공원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빗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에 시공될 예정인 판매시설의 경우, 사업주체 측의 사업추진 계획 등에 따라 인허가 변경을 거쳐 건물 레이아웃, 외부 디자인, 층고, 층수 등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12동, 113동, 114동 등 인접한 동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진동 등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계획되어있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준공시점에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외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은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민들의 타 단지 내 출입 및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며 각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설치 사항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들에게서 직접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지붕층 일부 또는 부대시설 및 아파트 주동 인근에는 DA, 실외기 및 제연팬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장비의 소음, 진동, 시야방해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반 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기초 형식(말뚝 기초 및 지내력 기초 등) 혹은 단지외부 옹벽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 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분양당시 주거분 대지비율 면적(분양 이후 용도별 면적이 변경되더라도 주거분 대지면적은 변경없음)을 주택형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의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사가 시공하지 않는 단지 이외의 시설은 모형에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며, 단지 내 실외기, DA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단지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사인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면면계획, 차수판, 외부난간 형태/높이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는 외벽 마감재, 풍압 등을 고려하여 시공되며, 외부 창호의 크기 및 사양(프레임 두께, 유리사양 포함)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옥상, 옥탑층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축뢰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소방용 저수조, 소방용 펌프, 정화조 송풍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냄새,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04,109동 상부에는 소방용 저수조, 소방용 펌프 등이 설치되며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구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둥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부 여건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통합관리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고의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외장 주변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 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에 설치 예정인 마감재, 유상옵션 등은 시공여건 및 단종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인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인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세대별 옵션에 따른 공간 및 가구, 가전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허가(변경)도서 및 준공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및 지상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의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광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무인택배함,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지하 선칸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1층은 아파트와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이 분리되어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 내 택배배달차량 이동 등을 고려하여 차량 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7m로, 주차구획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2~3층은 차량통행구간은 2.3m, 주차구획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설비, 전기 배관 및 배선 등으로 유효높이보다 다소 부족한 위치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니 차량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및 유치원의 주차출입구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동일하나 지하1층 주차장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역은 별도로 구분되어있으며, 해당 운영계획은 준공 후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벽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동과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재활용품 창고, 동 통신실, 헬룸, 제연헬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저류조, 저수조, (각종)펌프실, 소화약제실, 사우나 기계실 등(주거, 비주거 포함)이 설치되어있어 소음, 진동, 냄새,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되고 일부 벽면 및 기둥에는 소화전 및 분전반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차량번호 인식등 자립형으로 설치되며 위치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설치시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고 이는 입주자 부담임을 인지 바랍니다.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층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사용에 따른 전기료 및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팬, 잡배수 배출 등 공용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로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및 전용 주차구획은 인허가 받은 계획에 따라 별도 구획없이 일반 주차구획과 혼재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공사과정에서의 발주처 협의 혹은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및 전용 주차구획은 각 동별 여건에 따라 주차대수 및 접근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 및 내부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및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고, 또한 한전 인입 정책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타 공동주택 등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인근 외부(일부 필로티 내부)에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 및 조정, 바닥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입점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키즈스테이션(차량진입부 인근 2곳에 설치_103동과 110동 사이, 105동과 106동 사이)과 통학차량 정차가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재활용 창고, 쓰레기분리수거장, 실외기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등) 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장소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인근 세대의 악취 및 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위치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 설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은 정화조 배기덕트가 매립설치되며, 지붕층 및 옥탑 일부구간 덕트 및 송풍기가 노출될 수 있고 소음 및 냄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급수,급탕,난방,오배수 등)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선큰 지하1층내 실외기가 설치되며,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커뮤니티 출입구 상부에 배관, 덕트 등이 시공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의 사우나는 기본적인 습식(냉수수),건식 시스템이 들어가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냉난방기,환기설비 등은 구조,마감 문제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계단실 위치 등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동선 및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세대 창호의 안전유리난간과 단지 바닥마감, 조경 등 고층아파트 특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진입층 및 공개공지 등 오픈 스페이스의 단지 주민 혹은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대지와 맞닿은 당 대지경계의 조경 및 토목관련 사항(공벽, 자재, 난간, 선형, 레벨, 단차 부위의 옹벽, 조경석 처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구간(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지자체 건축물 미술품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분양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계획구간 내 조경은 관련 규정 및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식재(교목, 관목 등)가 불가하여 잔디로만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및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경시설(폰드, 캐스케이드 등)과 물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놀이터 인접동은 시설 이용에 의한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빛번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게 되며,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녹화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차후 여하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본 단지는 건축위원회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라 일조수인한도 확보를 위해 일부 동(101동, 102동, 105동, 109동, 112동, 113동 등) 옥상에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는 일조공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인허가도서에 반영예정으로, 해당 설비로 인해 외부디자인 변경, 미관저하 및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경비실, 그 외 부대시설 등은 각 시설별(주거(아파트) / 비주거(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전용면적비율대로 면적분배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내부 레이아웃, 아파트등과의 간격, 단지 주변부와의 위치, 실외기 설치공간 등은 향후 관계자 협의 및 인허가 변경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외의 경우 모형을 달리 기능향상,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판매시설(대형상가)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 실외기, 주방배기 탈취필터, 소방환, 피뢰침 등 다량의 설비, 전기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 조망권 침해, 냄새,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동, 라인별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관련법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관련법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 등 외부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정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 시설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급수시설은 동절기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조 등(주거, 비주거 포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급수,급탕,난방,오배수 등)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붕층 일부에는 DA, 실외기실, 제연환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미관,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설계관련 주요사항</p>	<p>동별 설계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팻캐어존, 키즈카페, 소셜키친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DA), 근린생활시설, 재활용창고,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식재 및 시설물, 수경시설, 기타 실외기실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진동, 사생활권 침해,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보관함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택배보관함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재활용품 창고, 동 통신실, 환풍, 제연환풍,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저류조, 저수조, (각종)펌프실, 소화약제실, 사우나 기계실 등(주거, 비주거 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부에 급배기구(DA)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주동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방풍구조를 위한 도어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과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에 계획되어 있고,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지하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준공시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 등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썬큰, D/A, 탐라이트 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일부동 상부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위치 및 집광판의 규격/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동/세대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이 마주하고 있거나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가스입상배관은 외부로 시공되며, 저층부에 방범커버가 시공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동, 104동, 110동, 114동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 빗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3동, 104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인근에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 빗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과 105동 사이와 108동~110동과 112동~114동 사이는 통학로(학교가는 길)가 위치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5동, 106동 인근에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하거나 조명에 따른 빗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03동, 105~107동, 109동~111동 사이에 단지 내 차량 진입로 및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차량 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마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욕실 제외)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전기배선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다양한 옵션으로 인해 세대별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옵션 내용을 상세히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 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환기시스템은 기계환기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주방 배기 시스템은 직배기 시스템으로 천장내 클린호스 설치 되고, 외벽에 CAP 마감이 됩니다. • 외부난간 (콘크리트 난간 또는 난간대)의 디자인 및 높이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고,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의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현관 디딤판의 가공석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지정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난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옵션 평면 선택 등의 사유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욕실 바닥단차는 욕실화를 문짝에 걸리지 않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으며,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공되며 미선택 시 전 타입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실외기 가동시 외부로 공기를 토출시키기 위한 그릴창, 고정식 방충망이 내부에 설치되며 본 공사시 설치 제품 및 형태(그릴의 손잡이, 그릴날 등)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공사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옆에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실이 설치되며,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화재시 하층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 대피를 위한 하향식피난구의 해당 점검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름(층별 교차 시공)
-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감지장치 등의 설치로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발코니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여유공간을 필히 확인바랍니다.
- 발코니 및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일부 발코니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실외기실 또는 보일러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제습기 등 옵션선택시 세탁실, 실외기실에 배수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발코니의 분합문 하부 마감을 고려하여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마루 자재 및 지정 가공석재는 자재의 특성 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 바닥 및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젠다이, 주방 상판(주방벽 : 확장 or 유상옵션) 등에 사용된 지정 가공석재 및 타일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재 특성 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비확장 시 확장 세대와 상이합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 (상하 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 주택형(59B, 74B, 84A, 84B, 84C, 84D, 96 등)의 다용도실(주방 발코니)에는 결로현상 개선 등을 위해 인허가도서에 계획된 단열재 외에 별도로 외측 벽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벽체 마감의 추가 시공으로 인해 다용도실(주방 발코니) 안목치수가 도서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의 깊이는 배관 설치, 환기덕트 설치, 화장실 배기호스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설치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내 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각실 및 발코니 내부 벽체, 창틀 및 유리창 등의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민원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 양변기, 세면기, 수전, 휴지걸이, 수건걸이, 슬라이드바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일부 구간에는 급배수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바)창의 상부에 설비배관, 주름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팬트리,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에는 별도 제어용 난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각 타입별 설치위치(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혹은 다용도실 상부)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다용도실에 노출설치되며, 장비 하부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주방발코니 상부로 환기 설비배관 등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되지 않도록 천장을 시공할 경우 층고가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법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스배관은 가스레인지 좌,우측 주방가구 상부장에 은폐되어 설치될 수 있고, 주방가구 코너장쪽에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렌지후드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매립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 진행하는 경우, 문의없이 진행시 발생하는 피해는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인근 상부장에는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이로인해 내부 가구의 공간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화장실 물내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양변기 물탱크 주변에 자연현상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구간에는 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생소음은 하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PIPE SHAFT구획 벽에는 배관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계획되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가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및 실시도서와 안목치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의 마감치수는 시공시 벽체 및 천장에 별도의 마감재가 있을수 있으며 실시도서와 안목치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환기캡 설치로 인한 외부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기 설치될 예정이며, 천정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환기장치기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인허가(변경)도서 및 준공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세대 벽체(침실)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부 설비배관 점검 등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바닥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배수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 있습니다.
- 타입별 여건상 설비공사로 인해 커텐박스 형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정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대형타일 및 석재 등의 마감재는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 바닥 및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딤판의 가공석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사양(색상, 사이즈), 제조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상판, 벽 타일 / 지정 가공석재(세라믹타일<유상옵션>), 주방벽 (세라믹타일이나 엔지니어스톤) 및 인테리어성 마감재(거실아트월, 가구판넬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고,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비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배선기구 및 전기차단기는 미설치 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 배선, 통신기구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8-28번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해링턴스퀘어산곡역.com>
- 분양문의 : ☎ 032-511-2475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원적산공원 산곡역 한국지엠 부평공장

•원적산체육공원 산곡초 3번출구 지하철7호선 부마초

현장 견본주택 •롯데마트

•인천외고 산곡중

MAP & CONTACT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8-28번지
- 📍 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
- ☎ 032)511-2475

시행 산곡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효성중공업(주) | 진용기업(주)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